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 23.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5. 1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5. 10.

다. 상정일자 : 제9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3.5.27)

상정, 심사, 보류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6.1.20)

상정, 심사, 보류

제11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6.1.23)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용산구에서 납부하는 납부금액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기금의 조성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 2)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3조)
 -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 (5) 기금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비 등
 -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 3)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구본청의 국장 4인, 구의원 2인, 주민대표 3인, 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4)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1) 기금운용계획안
 - (2) 기금결산보고서안
 -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5)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7)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 등을 정리토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8)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 관한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용도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과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4인, 구의회의원 2인, 주민 대표 3인 그리고 환경전문가 2인으로 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였음.

-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중구·용산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구에서는 동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115억원 (중구:66억8천만원, 용산구:48억4천만원)을 납부 받아 구 금고 정기에 금으로 운용한 결과 2002년 11월 현재 이자발생 41억원 포함 총 156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매년 구 발전기금(반입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490,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은 2003년 5월 현재 건설공정 13%로 관리동 2층, 쓰레기 벙커 등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주민편익시설건립 협의 등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요망됨.

-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광역처리에관한협약에 의거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에서 받은 지원금은 2003년 5월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청장 방침으로 구 금고에 전액 예치하고 있는 바,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지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6. 1. 2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함.(안 제1조)

나. 제2항 중 “13인”을 “18인”으로, 제4항제2호 중 “2인”을 “3인”으로, 제4호 “환경전문가 2인”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인”으로 함.(안 제5조)

다. 제1호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안”으로, 제2호 “기금결산 보고서안”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함.(안 제6조)

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함.(안 제14조제2항)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안 부칙)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 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13인” 을 “18인” 으로, 동조제4항제2호 중 “2인” 을 “3인”
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인

안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안 제14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 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 대 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 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 부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액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설치및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u>에 의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u>13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p> <p>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2. 구의회 의원 <u>2인</u></p> <p style="padding-left: 20px;">4. <u>환경전문가 2인</u></p> <p>⑤ ⑥(생략)</p>	<p><u>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u>」-----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p> <p>② ----- -----<u>18인</u>-----</p> <p>③----- -----.</p> <p>④----- -----</p> <p style="padding-left: 20px;">2. ----- <u>3인</u></p> <p style="padding-left: 20px;">4.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인</u></p> <p>⑤ ⑥(원안과 같음)</p>

원안	수정안
<p>제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금운용계획안</u> 2. <u>기금결산보고서안</u> 3. (생략)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생략)</p> <p>②-----<u>제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6조(위원회의 기능)-----</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u> 2.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3. (원안과 같음)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원안과 같음)</p> <p>②-----<u>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u></p>

원 인					수 장 인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 종류	금 액	이 용	기 간	적 요			금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용		기 간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부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	담	과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당	장						계	담	장	
				월	당	주									
				조	사	사									
				결	담	과									
				계	당	장									
				월	당	주									
				조	사	사									
				결	담	과									
				계	당	장									
				월	당	주									
				조	사	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05.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와 서울특별시용산구에서 납부하는 납부금액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조성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3조)

-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 (5) 기금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비 등
-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다.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구분청

의 국장 4인, 구의원 2인, 주민대표 3인, 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1) 기금운용계획안
- (2) 기금결산보고서안
-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사.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 등을 정리토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33조

나. 지방재정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10조

다. 지방재정법시행령(2002.12.31 대통령령 제17871호) 제156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3.3.31~4.20)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04.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구에 납부하는 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5. 기금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비 등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국장 4인
2. 구의회 의원 2인
3. 주민대표 3인
4. 환경전문가 2인

⑤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청소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원회수시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회수시설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율	기 간	적 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	담	과
				재	당	장
				협조	담당주사	
				결	담	과
				재	당	장
				협조	담당주사	
				결	담	과
				재	당	장
				협조	담당주사	
				결	담	과
				재	당	장
				협조	담당주사	